

제303회 임시회
2011. 9. 30.(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9. 30.(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1년 9월 9일
- 다. 회부일자 : 2011년 9월 15일
- 라. 상정일자 : 2011년 9월 26일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성수)

가. 제안이유

- 현실과 불부합한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함께 하는 충북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추천 범위를 확대 운영하며
- 시상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상규정의 삭제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5년이상 도내 거주자 또는 직장근무자에서 타 시도 거주 충북출신인 자까지로 확대 (안 제2조)
-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11개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 (안 제3조)

-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 단체의 장으로 확대 (안 제8조)
- 시상시기 조정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한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함께 하는 충북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추천 범위를 확대 운영하며, 시상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상규정의 삭제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5년이상 도내 거주자 또는 직장근무자에서 타 시도 거주 충북출신인 자까지로 확대하며,
-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11개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 시상시기를 조정하고 부상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상대상자의 자격과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시상시기를 조정하며 부상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 수상부문을 11개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문별 공동수상을 허용하는 등 수상자를 늘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수상부문 명칭 중 너무 포괄적인 명칭은 지양하고 문학, 예술, 체육 등 성격이 뚜렷한 부문에 대하여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삶의질 향상부문 → 문학·예술·체육부문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수정안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9. 26, 박종성 의원

○ 수정이유

도민대상부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수상할 수 있는 단서조항 추가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호 “지역사회발전부문”을 “지역사회”, 제2호 “삶의
질 향상부문”을 “문화체육”, 제3호 “인재양성부문”을 “산업경
제”, 제4호 “산업·경제부문”을 “선행봉사”로 각각 수정

- 제9조에 단서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
수상할 수 있다.”를 삽입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사회
2. 문화체육
3. 산업경제
4. 선행봉사

제9조에 단서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술부문</u> 2. <u>문학부문</u> 3. <u>예술부문</u> 4. <u>지역발전부문</u> 5. <u>교육부문</u> 6. <u>체육부문</u> 7. <u>여성부문</u> 8. <u>청소년부문</u> 9. <u>농어민부문</u> 10. <u>산업부문</u> 11. <u>근로부문</u> <p>제9조(수상자의 결정) 대상수상자는 부문별 심사부의 예심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p>	<p>제3조(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중복을 크게 빛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사회발전부문</u> 2. <u>삶의 질 향상부문</u> 3. <u>인재양성부문</u> 4. <u>산업·경제부문</u> 	<p>제3조(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중복을 크게 빛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사회</u> 2. <u>문화체육</u> 3. <u>산업경제</u> 4. <u>선행봉사</u> <p>제9조(수상자의 결정) 대상수상자는 부문별 심사부의 예심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u>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u></p>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를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도민으로서’를 삭제하고, “충청북도도민대상(이하 “대상” 이라 한다)”을 “충청북도 도민대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충청북도 도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추천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내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인 자

제3조에 단서 “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충북을 크게 빛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다.”를 삽입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사회
2. 문화체육
3. 산업경제
4. 선행봉사

제4조 중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를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특별공로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가 제3조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로 하고, “5인씩 위촉한”을 “7~9명의”로 하며,

제2항 중 “배수추천”을 “배수 추천”으로 하고, “전문인사중”을 “전문가와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중”으로 하며,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8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추천마감일후”를 “추천마감 후”로 하며, “종료 후”를 “종료 후에는”으로 하고,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제4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며,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서기 약간명”을 “각 부문별 서기 1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매년 9월말까지 시장·군수가 추천하되”를 “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하며”로 한다.

제9조에 단서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상) 대상수상자에게는 도지사가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상장을 수여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대상수상자에 대한 예우) 도지사는 대상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하여야 하며,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